

인적자원개발의 질서: 참여와 공동체자유주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정 기 오

지난 10년 간 정책과 행정 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유행어가 있다면 <공동체>와 <참여>의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용어는 그 어떤 정치적 질서를 내포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용어처럼 이 점에서 오해된 단어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1990년대이래 국제협력개발의 원칙으로 참여기반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강조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역시 참여기반 인적자원개발(Participatory HRD)의 이념 하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예상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은 학교나 대학 등 교육기관만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주체들이 헌법적인 질서의 틀 내에서 법규에 의한 정당성과 권리에 의해 뒷받침된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을 포괄하는 참여의 틀을 유지하고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임이 될 것이다. 이 참여의 틀을 우리는 <공동체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권의 일환으로서 학습과 교수 활동

본래의 참여(engagement)는 참여하는 사람 스스로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입각한 도덕적 법적 의무와 책임의 수락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대체로 진정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을 앞에 놓고 실전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은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이를 옆에서 지켜 보면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 제 아무리 많은 말과 조언을 하더라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훈수꾼일 따름이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 훈수꾼이 어느 한쪽에 내기를 걸었다면 바로 그 때부터 그의 말과 행동은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된다.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할 것은 <참여>라는 이름 아래 훈수꾼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개개인들의 근원적 이해관계이자 기본적 권리의 하나는 스스로 학습하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른 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학습을 통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핵심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참여의 원동력이자 근원적인 개인 주도성은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이 국가나 기업, 기타 조직된 단체들의 활동에 한정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와 정치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개인들의 이러한 자기주도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균형된 인간개발이 성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사, 대학교수, 학원 등 각종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타인을 가르치는 직업인들의 교수활동의 근본적인 정당성은 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상을 타인에게 적절한 표현 수단을 통해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이 놓인 직업적 상황을 규율하는 법규와 계약에 의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로 제약되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유형화된다.

교사들의 교육권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직무상의 권능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 직무의 기초는 비록 법규상 계약상 공교육목적을 위해 제한되지만 교사들의 표현과 교수의 자유에 있는 것이다.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는 그 표현의 자유가 연구 교수 및 발표를 포함하는 학문의 자유라는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모든 사람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인간개발을 위해서는 이른 바 <가르치는 사람>들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다.

한편, 학습 활동 역시 개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외침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활동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개인이 학습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헌법적 기본권인 행복의 추구를 위한 것이다. 학습은 무엇 보다 먼저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고 실천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학생들의 학교학습이 개개인의 행복 추구와 역행된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그 학교는 잘못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정을 받아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행해지든 지역사회 기타 다른 곳에서 행해지든 개인의 평생학습 활동은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부정하는 학습프로그램은 제도적으로는 인적자원개발 또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용인될 수 없다.

공동체주의와 학습공동체

원래 공동체이론 또는 공동체주의는 정부의 규제에 대항하는 〈자치〉의 이론이며 그 한도에서 무정부주의의 이론이기도 하였다.¹⁾ 교육공동체 이론 역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에서 교육공동체론은 교육자치, 학교자치의 이론이기도 한 것이다. 흔히 잊혀지고 있지만 기업 역시 회사정관을 토대로 하는 공동체이며 학습공동체이다. 국가가 기업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기업이 가진 자치공동체로서의 성격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에 떠오른 교육공동체론은 무엇보다도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의 확대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표면상 내세우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원노동조합과 중앙정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부중심의 집권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노동조합이 교육지배구조의 정점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항운동으로서 나타나게된 측면이 매우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공동체〉의 개념이 비교적 일반화된 분야는 기독교교육학에서였다. 학습공동체 성격이 강했던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탓일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1960년대에 유행하였던 지역사회교육(community education) 운동과 그 이론에도 교육공동체의 개념이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수입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운동에도 이러한 사상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규 학교 교육에 관한 한 학교가 공동체라는 개념은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교육공동체론은 아직 순진한 낭만적 이념의 성격을 못 벗어남으로써 현실의 정책과 학교제도에 구체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자치의 최종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는 개별학교 지위의 법인화라든가, 시·군 단위 교육자치의 실현 등 교육공동체 존립의 전제가 되는 제도의 확립에는 거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근대사회 질서를 이끈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국가와 자연인인 개인 이외에 그 중간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제도를 “양시앵 레짐(ancient regime)”이라는 이름으로 혁파하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근대적 회사 이외의 모든 단체와 법인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국가와 개인이라는 양극단 사이에는 전형적 공동체인 가정을 위시하여 자치권을 가진 도시와 대학, 각종 직능단체 교회 등 수많은 종류의 여러 공동체가 존재해 온 것이

1) 19세기의 무정부주의가 공동체이론에 기반을 둔 것임은 정치사상사에 있어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후반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일부 무정부주의의 운동 단체나 그 이론가 스스로 공동체주의야말로 무정부주의의 핵심사상임을 천명하고 있다.

역사적 전통이며 이를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다. 자유주의를 보완하는 공동체주의의 풍부한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 교육분야는 특히 국가와 개인의 중간에 자율적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이다. 지방 교육자치, 대학자치,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과 같은 개념이 바로 그의 징표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루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구로부터 밀려온 근대적 질서를 수용하여 근대화 과정을 추구하면서 프랑스 혁명 직후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개인 사이의 다양한 공동체적 질서를 거부하고 백안시하여 왔다. 이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국가가 국민교육의 주체로 전면에 나서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라는 개인이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외에 그 중간에 존재하는 교사, 학교, 대학,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교육체제의 도구적 지위로 격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낳은 것은 거대한 교육관료주의체제와 그 대척점에 서서 산별 노조이념을 추구하는 전투적 교원노동조합의 양자에 의해 왜곡된 오늘날의 기형적 교육체제이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역교육자치 등 교육에서의 공동체적 질서야말로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결 론 : 공동체자유주의와 지역인적자원개발

오늘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역개발 기본전략은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정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국가로부터의 규제로부터 벗어난 영역 즉 자치의 영역에서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이다. 지역정체성은 전국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책에서 나올 수는 없다. 지역공동체 스스로가 고민하여 수립한 지역 고유의 정책만이 지역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지역공동체 스스로의 학습과정이며 공동체자유주의에 입각한 지역인적자원개발이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